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*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626호, 2021. 12. 21. 공포, 2022. 12. 22. 시행)됨에 따라,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사업의 내용, 위탁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.

* 장기구득기관: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,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, 장기 등 기증 설득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7. 25. ~ 9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) ① 국가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사업의 내용, 위탁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2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) ① 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사업의 내용, 위탁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31